|  |
| --- |
| **제1회 갈등해결대화전문가(2급) 자격시험 응시원서** |
| 응시번호 | 작성하지 않음 (응시기관에서 작성) | (사진 必) |
| 이름 |   |
| 주민등록번호 |  |
| 주소 | (우편번호 : ) |
|  |
| 연락처 |  | 이메일 |  |
| **응시 자격 확인** |
| 기간 | 교육과정 명 | 이수시간 |
|  |  |  |
|  |  |  |
|  본인은 제1회 갈등해결대화전문가(2급)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(사)갈등해결과대화 자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 2023년 01월 일이름 (날인 또는 서명)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이사장 귀하 |
|  |

|  |
| --- |
| **제1회 갈등해결대화전문가(2급) 자격시험 응시표** |
| (사진 必) |  ① 응시번호  |  ② 성명 |  |
|  작성하지 않음 (응시기관에서 작성) |  ③ 주민등록번호 |  |
|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 |
|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** **(사)갈등해결과대화(이하 “법인”이라 함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으로써 동법에 의거,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인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의 업무처리(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)를 위한 필수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ㆍ제공되지 않습니다.**  **수험자는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·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법인의 민간자격시험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민간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.** |
| 본인은 법인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,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(이하 “개인정보”라 함)를 수집·이용하는것에 대하여 □ **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** 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(개인정보처리자) : (사)갈등해결과대화  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법인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의 업무처리(응시·면제자격 서류심사 등) 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항목 : - 개인정보 등(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락처, 주소, 전자메일주소 등) - 본인이 응시·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(학력증명서, 교육이수(확인)증,  자격증 등 각종 제출서류) 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민간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|
| **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**·**처리 및****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.** 2023년 01월 일 신청인 (인)**(사)갈등해결과대화 이사장 귀하** |
| **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**============================  **□ 응시원서**   ① 응시번호 : 접수 후 갈등해결과대화에서 일괄 부여하니 공란으로 두세요. ② 성 명 :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세요. ③ 주민등록번호 :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세요. ④ 주 소 : 현재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세요. ⑤ 연 락 처 : 응시자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(유선전화 포함)을 기재하세요. ⑥ 이 메 일 : 응시자의 이메일을 기재하세요. ⑦ 응시자격확인 : 본인이 이수하신 ‘필수교육(30시간)’과 ‘갈등해결과대화 2급 교육(85시간)에 관해 기입해 주세요.  **□ 응 시 표**   ① 응시번호 : 접수 후 갈등해결과대화에서 일괄 부여하니 공란으로 두세요. ② 성 명 : 응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세요. ③ 주민등록번호 :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세요.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**응 시 자 유 의 사 항** |
|  - 수험생은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 -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- 시험 중 부정 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됨을 물론 향후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.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사)갈등해결과대화(02-3667-26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